

-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대하여 당해 시의 동지역은 시로, 읍·면지역은 군으로 보며, “인구 50만이상 시”라 함은 동지역의 인구가 50만이상인 경우를 말함
- 광역시에 대하여 군지역은 군으로, 그 밖의 지역은 시로 봄

## VI. 면허세의 부과징수

### 1. 납 부 (법 제165조)

- 새로이 면허를 받거나 그 면허를 변경받는 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소재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·군에 그 면허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
-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의 경우 그 갱신에 따른 면허세에 대하여는 그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납기에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징수함

### 2. 납 세 지 (법 제165조)

- 당해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: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
- 당해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: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

### 3. 납 기 (법 제165조)

- 정기분(간주면허) : 매년 1. 16~1. 31
- 수시분(신규면허) :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

### 4. 납세의 효력 (법 제166조)

- 피상속인이 납부한 면허세는 상속인이 납부한 것으로 간주